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신홍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50호로 2023년 11월 9일 신홍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무원 등에 대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주민권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의 근거를 「지방공무원법」으로 명시함
(안 제4조 제1항)

나. 수취액 3천만원 이상 등 중대비위에 대한 신고기한 신설(안 제4조 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11. 10. ~ 11. 14.)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함에 있어 중대비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신고기한)제1항**은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¹⁾의 근거조항을 기재하여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안 제4조(신고기한)제2항**에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고기한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영등포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2008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임.
- **안 제4조제1항**은 현 조례에서 부조리 신고기한을 행위일로부터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기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하고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 등과 관련된 사항은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는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로 변경함. 이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현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제2항은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와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7년 및 15년까지 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형법」상 뇌물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의 시효기한에 준하여 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중대비위 사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신고기한을 연장한 것임.

-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의 자치구²⁾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확대하였음.
-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제도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 개정을 통해 영등포구 공직자로 하여금 부조리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2023. 9. 기준.)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

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